

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92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5. 7.

발의자 : 임이자 · 한정애 · 문진국

김성찬 · 장석춘 · 김태년

추경호 · 원유철 · 김승희

김용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12월 하청업체에서 홀로 일하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, 2020년 1월 16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(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 전부개정)이 시행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됨에 따라,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흄결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 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,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의 의무 위반 시 벌칙을

추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
(안 제29조, 제72조, 제168조제2호 및 제175조제4항제6호).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근로자(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를 “근로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
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  
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72조제1항 중 “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이”를 “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에 따른 건설공  
사도급인”을 “건설공사도급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1항에  
따른 건설공사도급인”을 “건설공사도급인”으로 한다.

제168조제2호 중 “제55조제1항”을 “제55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5조제4항제6호 중 “제125조제1항”을 “제125조제1항·제2항”으로 한다.

օ)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업주는 <u>근로자(건설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<u>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</u>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(이하 “산업안전보건</p>	<p>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근로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 다만,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 -----</p> <p>-----<u>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·관리하는 자(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)</u>가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관리비”라 한다)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(計上)하여 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.
(②) (생략)	-----
③ <u>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</u> 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(④) (생략)	-----
⑤ <u>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</u>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 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6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2조제4항 후단, 제53조제3항, <u>제55조제1항</u>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	2. ----- ----- <u>제55조 제1항·제2항</u> -----

<p>한 자</p> <p>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제125조제1항</u>에 따라 작업환 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</p> <p>7. · 8. (생 략)</p> <p>⑤ ~ ⑦ (생 략)</p>	<p>-----</p> <p>제175조(과태료) ① ~ ③ (현 행 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 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125조제1항·제2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7. · 8.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⑤ ~ ⑦ (현 행과 같음)</p>
--	--